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22(금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6월 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4일

-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기업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및 행·재정적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우대 풍토 확산
-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도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다자녀 우대풍토 확산을 통한 출산 장려 유도(안 제 11조)
 -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혜택 부여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 수정(안 제12조)
 - 출산장려의 날 → 인구의 날
- 지원대상을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(안 제13조)
 - 민간단체 → 민간단체 및 기업 등
-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(안 제13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기준 일부 자구 수정(안 제15조제4항, 제17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)

-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출산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,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도지사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의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하여 줄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인구의 날)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도지사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민간단체”를 “민간단체 및 기업 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기관·기업체 CEO포럼 운영) ① 도지사는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럼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제4항 본문 중 “새로이 위촉된”을 “새로 위촉된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다자녀 우대 카드발급)① 도지사는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1조(다자녀 우대 카드발급)① 도지사는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의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하여 줄 수 있다.</u></p>
<p>제12조(출산장려의 날)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7월 11일을 <u>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의 주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인구의 날)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7월 11일을 <u>인구의 날로 정하고 도지사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<u>민간단체에</u>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지원)</p> <p>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<u>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</u>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3조의2(기관·기업체 CEO포럼 운영)</p> <p>① <u>도지사는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포럼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<u>새로이 위촉된</u>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	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<u>새로 위촉된</u>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
<p>제17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	<p>제17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<u>총괄</u>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30조의2(인구의 날)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 과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본조신설 2011. 8. 4)